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236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토사를 덤프트  
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클레인으로 퍼서  
올린 토사가 부근의 자전거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들이 떨어진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2. 원심은,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해 땅을 파서 흙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물이 낙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클레인 기사는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적재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 작업 중 토사 등 적재물이 덤프트럭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작업의 중단 내지 안전펜스 설치나 신호수의 배치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원심 공동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3.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